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우주형*

차례

- I. 들어가며
- II.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체계
 - 1. 입법화 과정
 - 2. 현행 법제의 이념
 - 3. 현행 법제의 체계
- III.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 1. 장애인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
 - 2. 장애인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 IV. 맺으며

* 법학박사, 나사렛대 교수

접수일자 : 2011. 12. 14 / 심사일자 : 2011. 12. 16 / 게재확정일자 : 2011. 12. 16

I. 들어가며

전 세계에 6억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살고 있으며, 그 가족까지 합치면 20억명이 매일 장애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은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크면서도 불이익이 가장 심한 소수자이다. 통계 수치를 보면, 전 세계 극빈층 가운데 약 20%는 장애인이고, 전 세계 노숙 어린이 가운데 약 30%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성인 장애인의 문해율(literacy rate)은 3%가 넘지 않고 장애여성의 문해율이 1% 미만인 나라도 있다.¹⁾ 세계보건기구(WHO)는 장애인구를 전체 인구의 10%로 추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장애인출현율이 4.59%로 독일 10.2%, 미국 19.3% 등과 비교할 때 낮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²⁾ 이는 나라마다 장애인의 범주 및 정의가 다름으로 인한 차이라 할 수 있지만, 2010년 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250여 만명에 이르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경제력 규모는 10위권 안팎에 드는 경제선진국이라 할 수 있지만, 종합복지지수는 하위권인 26위로 조사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급여 보장율은 29위인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다.³⁾ 이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수준이 경제력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지금까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⁴⁾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 제정으로 장애인복지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

1) 유엔경제사회국·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국제의원연맹 엣음, 윤삼호 옮김, 배재를 넘어 평등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08, 11쪽.

2) 좌혜경,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실”, 제1회 전국뇌병변장애인대회 자료집,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11. 10. 26., 10쪽.

3) 연합뉴스, 2011. 3. 28., 기사 참조.

4) 박재원,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전개과정”, 지역과 정책 제2호, 목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4, 18~20쪽 참조. 여기서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과정을 3기로 나누었으나, 필자는 3기(1989~현재) 이후를 구분하여 4기로 나누었다. 이는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 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폐려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상의 팔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현황과 체계

1. 입법화 과정

1945년 8·15 해방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제는 주로 군경희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제정된 여러 사회복지관련법 중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법률로는 「군사원호법」,「경찰원호법」,「전몰군경유족파상이군경연금법」,「군사원호대상자 고용법」,「사회보장에관한법률」,「사회복지사업법」,「국민연금법」,「의료보호법」등이 있다. 이를 사회복지관련법에는 장애인복지가 부분적으로 언급되고 다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⁵⁾ 그러나 이 기간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제로서 의미있는 법으로는 1977년에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관

5) 박병식 외 3인, 장애인 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정책기획평가원, 2008, 119쪽.

련 법률로서는 최초의 개별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197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당시 중학교 평준화에 따른 학습지진 또는 정신지체학생의 문제해결책으로서 1974년에는 일반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특수학급이 설치되게 되었고, 이어 1977년에는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미흡하나마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 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이나 단체에서 그동안 임의로 실시해오던 특수교육을 국가의 제도로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특수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충실히 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30년간 여러 차례 개정을 하면서 지속되어오다가 2007년 5월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장애인특수교육법」으로 약칭함)으로 대체되었다.

1981년에는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은 주로 권고조항과 선언적 의미의 프로그램적 규정으로 이루어진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장애인복지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연금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교육법 등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장애인 복지규정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 법의 제정으로 그나마 장애인이 법률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장차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제안이유는 “우리나라가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법 제정 이후 한동안 장애인의 복지에 대해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1989년 종래의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전면개정하면서

그 명칭도 「장애인복지법」으로 바꾸어 지금까지 시행중에 있고, 2007년에 또 전면개정된 바 있다.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0년에 이 법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으로 약칭 함)으로 개칭되면서 전부개정되고, 2007년에도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7년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은 장애인에게 생활상의 시설·설비 및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법의 성격을 가진다. 2005년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으로 약칭함)과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그간 장애인계의 숙원이었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되게 되었다. 2008년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법」이 시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으로 약칭함)이 10월 5일부터 시행하고, 6월엔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이 제정되어 2012년 8월 5일에 시행하게 된다. 이들 장애인 관련 현행 개별법들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장애인 관련 현행법률

법률명	제정 년도	법의 목적	주무 부처
장애인복지 법	1981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	보건 복지 부

법률명	제정 년도	법의 목적	주무 부처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 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함.	고용 노동 부
장애인·노 인·임산부 등의편의증 진보장에관 한법률	199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고 정보 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 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보건 복지 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 진법	2005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 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 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	국토 해양 부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	2005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중소 기업 청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07 (2008. 4.11. 시행)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 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 치를 구현함.	보건 복지 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2008. 5.26. 시행)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 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 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 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 여함.	교육 과학 기술 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2008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 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 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돋고 국민경제발 전에 기여함.	보건 복지 부
장애인 연금법	2010.7.1. 시행	장애인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 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함	보건 복지 부

법률명	제정 년도	법의 목적	주무 부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11. 10.5. 시행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보건 복지 부
장애인활동 복지지원법	2011 (2012.8.5 . 시행)	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별한 복지적 요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보건 복지 부

2. 현행 법제의 이념

장애인복지정책의 이념은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지금까지의 국내외적인 규범이나 정책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인권존중, 생명존중, 전인격의 존중, 사회통합의 존중, 평등의식의 존중, 정상화의 존중, 기회균등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장애인정책의 이념들이 법제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현행법제의 대표적인 법 내용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4가지 이념으로 정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즉 보편적 인권보장,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고용·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그리고 자립생활(IL) 실현이다. 이 4가지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법제도가 실현해야 할 과제이면서 실정법상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

(1) 보편적 인권보장

장애인 관련 법제가 추구하는 법적 이념은 1차적으로는 헌법 이념에서

6) 박병식 외 3인, 같은 책, 145쪽.

찾아볼 수 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규범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인권보장을 천명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의 궁극적 목적은 장애인도 누구나 누리고 사는 보편적 인권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있다.

장애인에게 있어 중요한 보편적 인권 목록의 예를 들자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현, 행복추구권, 생명권 존중, 평등권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일할 권리의 보장, 생존권 보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적 인권 외에도 헌법은 제34조 5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국가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보장권, 즉 복지(서비스)권을 보장하고 있는 근거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기본권으로서의 사회보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보장을 현행법률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보장”을, 직업재활법 제1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에서는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 장애인특수교육법 제1조는 “자아실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렇게 볼 때, 보편적 인권보장은 장애인 관련 현행법제의 중요한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규범으로서 ‘지적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Mentally Retarded Persons, 1971)’, ‘장애인 권리선언(Declaration on the Rights of Disabled Persons, 1975),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6)’ 등에서도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보장은 확인되고 있고, 우리나라 장애인인권헌장(1998)에서도 보편적 인권으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평등권), 정치적 권리, 인간다운 생활권 등을 선언하고 있다.

(2)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국제연합(UN)이 2006년 결의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권리 보장의 일반원칙으로서 제3조의 (c)항 및 (e)항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 및 통합”과 “기회의 균등”을, 동조 (b)항 및 (g)항에서는 “차별금지”와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 협약 제5조는 ‘평등과 차별금지’를, 제12조는 ‘법 앞의 평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3조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천명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편의증진보장법 제1조에서 는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 이동편의증진법 제1조는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장애인 특수교육법 제1조에서도 “자아실현과 사회통합”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협행법제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고용·직업재활 및 소득보장

장애인에게 있어 일할 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당연한 기본적 인권에 해당하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고용과 직업재활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N의 장애인권리협약도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각각 ‘근로 및 고용’과 ‘적절한 생활수준과 사회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제 역시 이러한 현실적 욕구를 하나의 실정법상의 실현해야 할 이념으로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념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구체적인 법률(특별법)을 듣다면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우선구매특별법이 있다.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의 주요 내용은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소득보장 및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것이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래서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통해 소득보장을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다.

가장 최근에 제정된 우선구매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돋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법 역시 가장 취약한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돋기 위하여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4) 자립생활(IL) 실현

최근 장애인정책의 주요한 패러다임 변화의 하나는 자립생활(IL, Independent Living) 패러다임의 등장이다. 이는 장애의 문제해결을 종래의 전문가 중심 관점에서 당사자 중심의 주체적 관점으로 이동한 것이다. 즉 장애의 문제는 장애인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인식하에 문제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선택권(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주체적 결정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호활동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케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이다.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은 오늘날 장애인복지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⁷⁾

장애인권리협약은 제3조 (a)항에서 ‘자립에 대한 존중’을 천명하고, 또 제19조에서 ‘자립적인 생활과 지역사회통합’을 별도 규정하고 있다. 2007년에 전문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이러한 자립생활 이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4장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3. 현행 법제의 체계

(1) 일반법과 특별법의 체계

1)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장애인 관련 법률들의 특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복지서비스 증진 등 넓은 의미의 장애인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7) 김종인 외 2인,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2007, 142~151쪽 참조.

오늘날 장애인 관련 법은 복지를 권리로서 인정하여 복지권의 주체로서의 장애인의 삶을 인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질적 평등권, 자유권, 생존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법제도인 것이다. 2007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의 인권 및 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의 역할과 기능을 가진 법이었다. 즉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에는 장애인의 권리(제4조)와 차별금지(제8조)에 관한 규정과 함께 의료·교육·직업·사회 재활 등에 관한 복지서비스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장애인복지법은 급부규범적 성격과 동시에 인권보장규범으로서의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지만 그 무게중심은 인권보장 측면보다는 국가의 급부의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사회보장급부의무 역시 그 목적이 국민의 사회권 내지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권보장의 범주에 아우를 수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사회권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유권 및 정치권 등의 영역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인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은 그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현행법상의 체계로서는 장애인 인권보장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보아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외의 개별법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인권보장과 복지서비스의 기본법으로서의 두 개 축으로 하면서 개별영역별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⁸⁾ 즉 장애인 관련 실정법으로서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의 체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8) 박병식 외 3인, 같은 책, 122쪽.

<표 2> 장애인 관련법상의 일반법과 특별법

일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특별법	장애인특수교육법,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편의증진 보장법, 이동편의증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등

일반법은 법의 효력이 특별한 제한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은 일정한 장소·사항·사람 등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법을 말한다. 예컨대,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특수교육법이나 직업재활법은 특수교육 또는 직업재활이라는 한정된 사항에 관하여 규율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은 일반법, 장애인특수교육법이나 직업재활법은 특별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일반 개별법상의 특별규정

한편 장애인 관련 현행법에는 앞에서 든 개별법 이외에도 일반적인 법 규정 속에 장애인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정 보접근권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장애인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에 관련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 운전면허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등에 별도의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이외에도 「도서관법」,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방송법」, 「영유아보육법」, 「우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주차장법」, 「형사소송법」 등에 장애인 관련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일반적인 법률사항에 장애인 관련 규정이 특별규정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그 내용에 따라서는 그 법률 내에서의 법조항 사이에서 우선적 효력이 있는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장애인기본권과 법체계

1) 장애인기본권의 의의

장애인도 당당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 실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적·법적 측면에서 장애인기본권의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장애인의 인권은 비장애인의 인권과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이면 당연히 누리는 권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당연한 권리가 ‘장애’라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제약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한 처우나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거나 제거할 때에 비로소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다름없는 장애인의 인권보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⁹⁾

이렇듯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받고 있는 그 배경에는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1차적으로 큰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는 장애인도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보장받기 위해 더 이상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상에 보장되는 기본권의 향유주체인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내용으로서 ‘장애인기본권’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의 인권과 구별하여 ‘장애인기본권’이란 용어의 의미는, 장애인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 특별히 인정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기본권’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로 인하여 처하게 되는 사회적 불리를 극복하여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참여활동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인기본권 보장은 바로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기본권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것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권과 그것의 파생적 권리인 사회보장권(사회보장수급권,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이지만, 법이념적 기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9) 우주형, “장애인의 직업재활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논문, 중앙대학교, 2002, 6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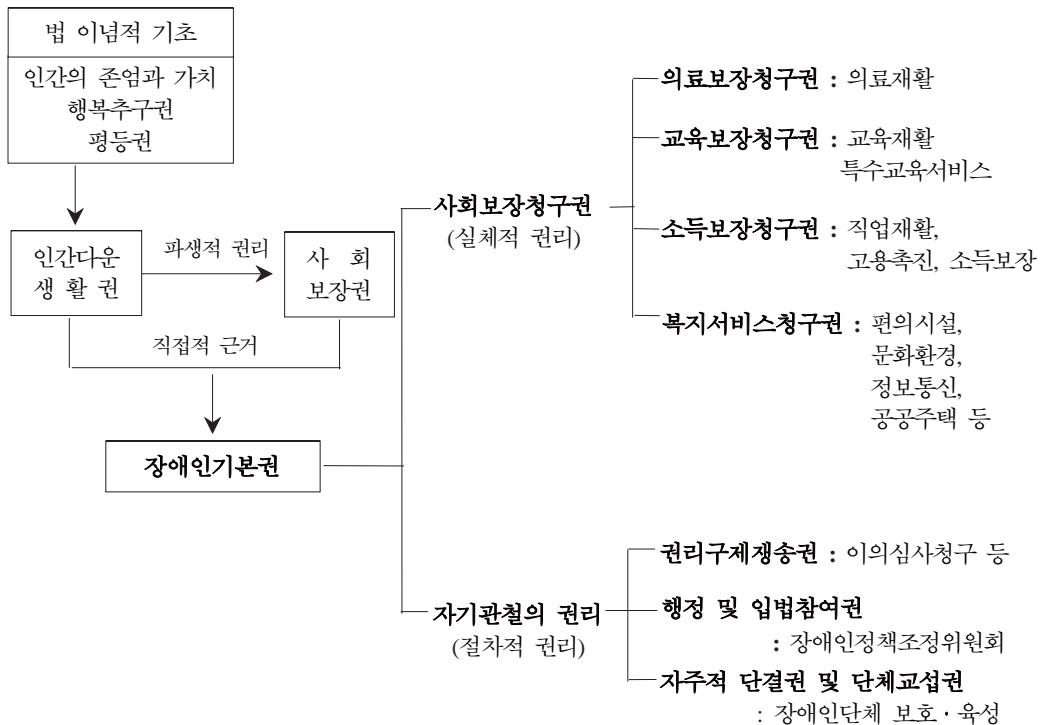
평등권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념적 기초 위에 장애인기본권의 내용은 크게 실체적 권리인 사회보장청구권과 절차적 권리인 자기관철의 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의료보장청구권, 교육보장청구권, 소득보장청구권 및 복지서비스청구권 등으로 이루어지며, 후자는 권리구제 청송권, 행정 및 입법참여권과 자주적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의료보장청구권의 구체적 실현으로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의료재활에 관한 제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재활의료의 제공, 장애인 보조기구의 제공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의료 및 보건지도를 받을 수 있고(동법 제34조), 장애유형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며(동법 제35조), 의료비 부담이 곤란한 장애인은 의료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동법 제36조),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대여 또는 수리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66조). 장애인에게 있어 이렇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권리는 바로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해 처하게 되는 일상적인 생활상의 불리함을 극복하게 해주어 사회적 통합을 가능케 해준다는 의미와 함께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 장애인의 교육보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연령·능력·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교육 실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입학거부금지 및 편의시설 정비조치 등(동법 제20조)과 자녀교육비의 지급(동법 제3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교육보장청구권을 장애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장애인특수교육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교육보장에 관한 특별법이다. 장애인의 소득보장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자금의 대여·생업지원·자립훈련비의 지급·생산품의 구매·인증 및 고용의 촉진 등에 관한 규정(동법 제41~46조)을 두고 있으며, 한편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재활법」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이외에 우선구매특별법도 소득보장청구권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또 장애인의 복지서비스청구권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수화 또는

폐쇄자막 등의 방영, 공공시설 등에의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안전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조치 강구 및 선거권 행사에서의 편의제공, 공공주택 등의 보급 및 문화환경 정비 등(동법 제22~28조)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이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편의증진보장법」에서는 장애인 등이 사회 생활과 사회활동참여를 함께 있어 시설·설비 및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접근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도 교통서비스 관련 규정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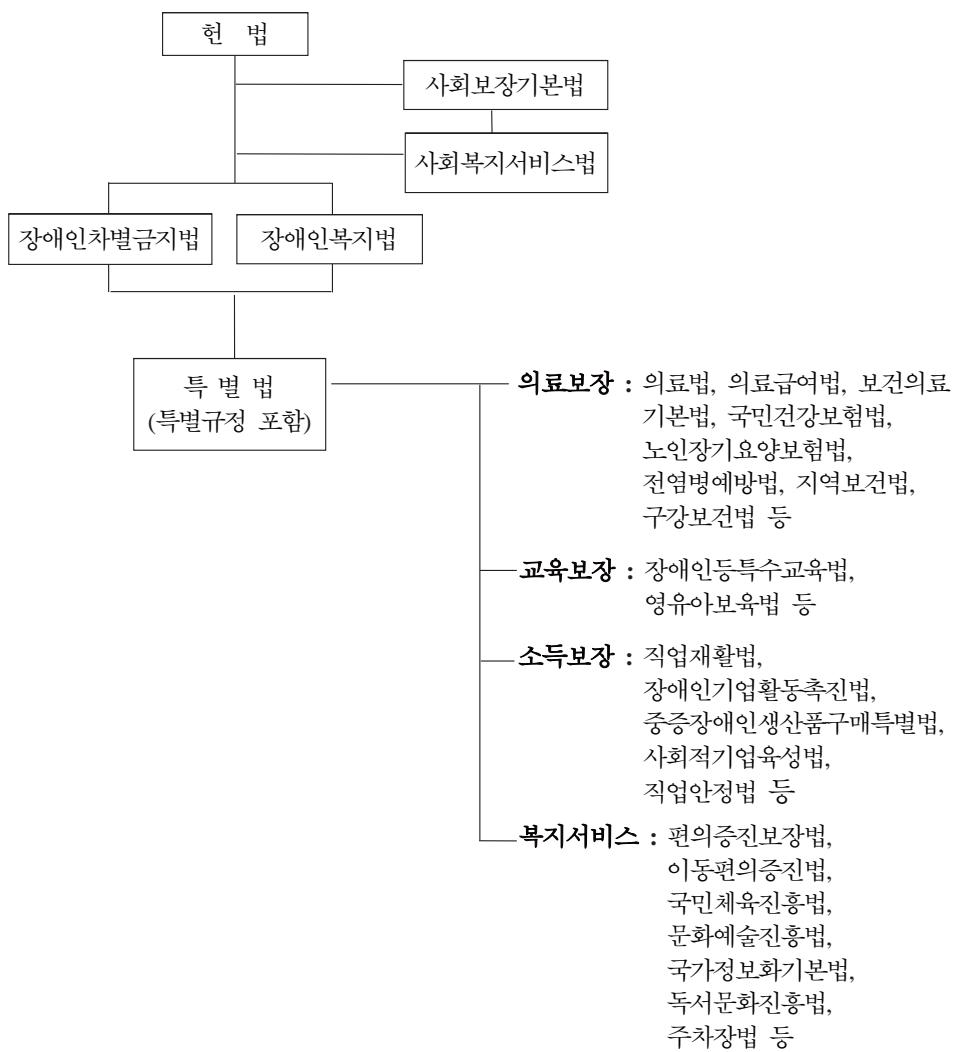
한편 절차적 권리와 관련해선 장애인복지법은 복지조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사청구가 가능하고(동법 제84조, 권리구제쟁송권), 국무총리 소속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위촉위원 중 1/2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행정 및 입법참여권). 또 장애인의 자주



<그림 1> 장애인기본권의 규범적 구조

적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규정을 두고 있다(동법 제63조).

이렇게 장애인기본권은 그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가 함께 보장될 때, 제대로 된 권리 실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장애인기본권은 장애인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소비자 주권으로서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와 더불어 실질적인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권리보장인 것이다.



<그림 2> 장애인기본권 보장에 따른 현행법 체계

2) 장애인기본권 보장에 따른 법체계

장애인기본권 보장에 따른 현행 법체계를 재구성하여 보면 <그림 2>와 같다.¹⁰⁾ 우선 특별법 형식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각각 장애인 인권보장규범 및 장애인 복지서비스급부규범의 기본법으로서 그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법은 장애인기본권의 총괄적 보장규범에 해당한다. 즉 장애인기본권 내용 전반에 걸친 사항을 이 두 법은 권리보장과 서비스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실체적 권리보장 영역(의료보장, 교육보장, 소득보장, 복지서비스보장)에 따른 특별법 및 특별규정들을 분류하여 체계화할 수 있다. 또한 절차적 권리들은 실체적 권리보장규범안에 함께 규정화되어 있다.

이렇게 장애인기본권 이론에 따른 법체계화는 각각의 법률들의 성격과 그 내용상의 특성을 분류화해줌으로써 그 법들의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법들간에 내용상 중복과 모순은 없는가, 다른 분류에 속하는 법들간에 마찰은 없는가 등을 점검해봄으로써 관련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기본권에 따른 법체계 정비는 어느 법이 어떠한 장애인기본권을 핵심적으로 실제 보장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해주는 장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III.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

1. 장애인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평가

여기서는 일반 법률 속에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규정은 차치하고 개별적인 단행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현행법률들을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함께 평가를 해보고자 한다.

10) 박병식 외 3인, 앞의 책, 152쪽.

(1)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3월 6일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4월 10일에 관보에 게재되어 공포되었으며, 1년후인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 법은 총 6장 5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가진다.¹¹⁾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이 법의 구체적·실천적 목적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다. 첫째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의 금지대상인 차별행위의 범위로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기타 장애인을 돋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를 차별하는 행위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차별의 영역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여섯 가지 영역으로 규정하여 생활상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차별을 금지도록 하였다. 특히 가정과 시설내 차별을 명시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에 관한 장을 별도로 규정한 점도 돋보이는 점이라고 할 것이다.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방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권, 악의적인 차별행위자에 대한 벌칙, 법원의 구제조치제도,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분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와 권리구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내용으로서 무엇이 차별행위인가에 관하여 여러 영역(예컨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등등)에

11) 우주형 외 2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53쪽.

결친 구체적 규정들을 두고 있고, 한편으로는 차별시정기구, 권리구제방안, 손해배상, 입증책임 및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악의적인 차별에만 시정명령을 가하고, 손해배상에서는 징벌적 성격이 빠지는 등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2)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은 1981년 심신장애인복지법으로 제정된 이래 전면개정은 1989년 및 1999년에 이어 2007년 4월 11일 개정까지 세 번 있었다. 이 개정법은 총 9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는 장애인의 권리와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내용들로서 구성되어 있어 이 법의 성격을 급부규범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서의 기본법이자 일반법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따라서 이 법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으로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실현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또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장애인복지법은 기본정책의 강구 및 복지조치로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 실태조사 및 등록제도, 사회재활, 직업재활, 교육재활과 장애 예방 및 의료재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 관련 규정,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과 단체,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전부개정한 장애인복지법은 현재까지의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었던 보호와 재활, 시설지원,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대 등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방향에서 전환하여 장애인들의 인권신장 및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에 이러한 장애인의 다양한 정책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장애당사자의 장애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활동보조인 파견 및 장애동료간 상담 등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시책을 강화하며,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관계부처간의 실질적인 정책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전면개정을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중앙행정기관별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 등 장애인의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여 장애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3)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1990년 1월 13일에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이름으로 제정되어 2000년 1월 12일에 현행법의 명칭으로 바뀌면서 전문개정되었다. 현행법은 총 6장 87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직업재활법에서는 ‘직업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별도의 장애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직업적 장애인’의 개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직업재활에 있어서 특히 중요시하여야 할 점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이므로 이 법에서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정의를 각각 내리고 있다. 이 법상의 장애인 정의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정의를 비교하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정의가 더 포괄적이며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하여 직업재활법이 ‘직업생활’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실시는 1차적으로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장애인 기타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에 특히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도록 하는 중증·여성장애인 우대원칙을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업재활법의 궁극적인 지향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서 타당한 규정이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직업재활법이 사회보장법인 공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은 특수공법인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으로 약칭)을 설립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의 업무를 위임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직업재활법은 이에 관하여 제5조 제1항에서 사업주에게 정부 시책 협조의무, 고용기회 제공의무 및 적정한 고용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차별대우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당연한 규정이나 현실은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특별히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에 대한 별칙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현행법상 별칙규정 없음). 이외에도 최근 추가된 사항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의무와 함께 노동부장관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등을 개발·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실시하여 2%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 제도를 연계하여 실

시하고 있다. 또 장애인 관련 전문요원으로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장애인 직업훈련 교사,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요원, 수화통역 전문요원 및 점역 전문요원 등을 양성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의 경우에는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다.

직업재활법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가 핵심적인 내용이며, 이를 위한 여러 구체적 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아직 충분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특히 고용의무제 실시에 따른 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문제와 지원고용 활성화 과제 등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할 것이다.

(4) 장애인 특수교육법

장애인의 교육권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은 2007년 4월 30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에서는 '장애인 특수교육법'으로 약칭함)이 새로이 제정됨으로 말미암아 폐지되고, 새 「장애인 특수교육법」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총 6장 38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 제정된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편 특수교육의 정의를 새로이 하였다. 기존 특수교육의 정의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성에 적합하게 실시하는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이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정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통

해 이뤄지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등을 말한다. 특수교육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확대·세분화시켜 규정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확대되었다. 초·중학교 과정에 머물러있던 의무교육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로 확대해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장애의 조기발견 체제의 구축과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였다. 현재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대부분이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하였다.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에 대해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장애가능성의 조기발견과 조기교육 기회의 부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대책도 강구하였다. 각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다. 장애성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하였다.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교육기관의 장, 특수교육관련 서비스의 제공·수업참여 및 교내외 활동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장애인 특수교육법은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특수교육 현장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면서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하여 조기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5) 편의증진보장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보장법’으로 약칭함)은 1997년에 제정되어 1998년 4월 1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은 본문 29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편의증진보장법은 제4조에서 장애인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서 “장애인등”이라 함은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예컨대,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이동약자는 이 법의 보호대상이다.

그리고 접근권이라 함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시설과 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접근권을 의미한다. 이 접근권의 향유 주체는 장애인등 이동약자 모두가 되며, 이 권리는 대국가적·대사회적으로 일정한 급부를 요청할 수 있는 청구권적 권리로 보아야 한다. 접근권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의 벽을 헐고 무장애공간(Barrier Free)

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권리이며, 편의증진보장법은 사실상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의미한다.

또한 편의증진보장법 제3조는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으로서 최단거리 이동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최단거리 이동의 원칙이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장애인 등이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 할 수 있도록 시설주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이 최단거리 이동의 원칙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편의시설의 설치(용도변경 포함)와 유지 관리의 책임은 1차적으로 해당 시설주에게 있다.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행하고, 각종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일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관 대상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편의증진보장법은 장애인의 접근권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실효성을 가지는 강행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법에서 규정한 법정의무 사항과 기준은 편의시설 설치의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보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이 법이 그나마 최소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그 최소기준만을 고집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장애인등에게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여야 한다. 또한 시설주관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설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법의 이러한 규정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많은 대상시설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폭넓은 감시장치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행법상의 미비한 점들을 개선하고 제재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 법의 목적과 취지가 아무리 좋을 지라도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장식용 법에 불과할 것이다.

(6) 이동편의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으로 약칭함)은 기존의 편의증진보장법상 미비하였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별도의 특별 법으로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5년에 제정되어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6장 34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편의증진보장법이 시설·설비의 동등한 이용과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접근권 보장의 법이라면,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권 보장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법은 편의시설을 통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이동약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이동편의증진법 제정에 따라 도로 및 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보장 부분이 편의증진보장법에서는 삭제되고 이동편의증진법의 대상으로 분리되었다.

이 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

또한 이 법은 제3조에서 이동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동권이라 함은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편의증진법상의 접근권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정법상으로는 편의증진보장법과 분리하여 별도의 법으로 보장하였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접근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면서 동시에 실정법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동권 역시 접근권과 마찬가지로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연차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6~8조).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은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설치하거나 주요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도록 한다(9~11조).

한편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정명령제도와 벌금 등의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도 규정하고 있다. 교통행정기관은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교통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비용을 고려하여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동편의증진법은 편의증진보장법과 함께 장애인의 접근권(이동권 포함)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 행복추구 및 사회참여 활동을 실현시켜주는 사회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편의증진보장법의 한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도 있겠지만, 대중교통이용 등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주무부처를 보건복지부가 아닌 실질적인 부서로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으로 볼 수 있다.

(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재가장애인들의 창업 지원과 장애인기업 육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에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본문 21조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비율이 최소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창업자금, 세금감면, 판로지원 등을 행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다.

장애인기업의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위원회를 두며, 중소기업청장은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 지원 등 장애인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교육·훈련·연수·인력·연구·상담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명의를 대여한 장애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기업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이 법은 장애인 창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장애인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반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취업연령이 지난 장애인들은 자립방안을 강구할 수 밖에 없지만 현행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지원하는 창업자금 지원은 한정되어 있으며, 한편으로 노점상이나 소상인들의 지원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취업지원정책의 중요성에 뜻지 않게 장애인의 자영업 창업과 장애인 기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경제·사회적인 자립과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 지원에 대한 또 하나의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우선구매특별법’으로 약칭함)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에 해당한다. 이러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취업활동 촉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은 2008년 3월 21일에 공포되어 6월이 경과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본문 19조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구매특별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돋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법에서는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추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및 시설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제품과 여성기업제품에 대하여도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과

같은 특별법 형식의 법을 별도로 제정할 수도 있겠으나, 「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서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다 강화된 우선구매 조항을 규정하는 형식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9)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연금법은 201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소득보장법의 하나이다.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무능력 중증장애인은 생활수준이 열악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으므로,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무기여식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하고, 소득인정액이 그 중증장애인의 소득·재산·생활수준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인 부가급여로 구분한다.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부가급여액은 월정액으로 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 수준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연금급여 지급대상의 지나친 제한과 낮은 급여액, 장애등급의 재심사라 할 수 있다. 장애

인연금은 소득보장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장애수당은 추가비용 보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제도는 행정적 낭비와 소비자인 장애인의 편리성 측면을 이유로 장애수당을 장애인연금으로 흡수하여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격과 목적, 대상, 역할 등이 다른 급여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ECD국가들을 보아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보전급여제도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10) 장애인활동지원법

2011년 1월 4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지원법’으로 약칭)이 제정되어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총 9장 49조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규정 중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를 근거로 2008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에 관하여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개선과 서비스이용권의 구체화¹²⁾를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장애인활동지원법이 장애인들에게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 제도 보다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실제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서비스보다 더 못한 서비스를 받게 되어 문제이다. 본인 부담금과 서비스 상한선 등의 문제로 기존의 지자체 추가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대상 제한의 문제, 국민연금공단에의 업무 위탁 문제, 본인 부담금의 증가 문제, 등급재판정제도의 문제, 활동보조인의 교육과 처우개선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다고 할 것이다.¹³⁾

12) 2010. 12.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3쪽 참조. 이 결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13) 조홍식 외 4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제40회 RI KOREA 재활대회 자료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1, 217~221쪽 참조.

(1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은 2011년 6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 지원을 받게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6세 미만의 장애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장애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감독, 그밖에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비나 보조기구·보육·가족·돌봄 지원이나 발달재활서비스,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전환서비스와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개별 복지지원의 목적에 따라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게 현금·현물로 지급되며, 현물일 경우 복지지원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복지지원 이용권은 복지지원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복지지원의 제공방법이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진다.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정된 기관·단체,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등은 복지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복지지원 제공기관은 장애 유형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계획·실시하여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아동지원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당초 법안에 있던 발달재활사의 국가자격증 제도화를 이룩하지 못한 점, ‘중앙장애인복지지원센터’의 기능 약화 그리고 의료적 서비스가 동반되는 ‘중증장애인영유아전문서비스’의 삭제조항 등은 아쉬운 점이라 할 것이다.

2. 장애인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

(1) 장애인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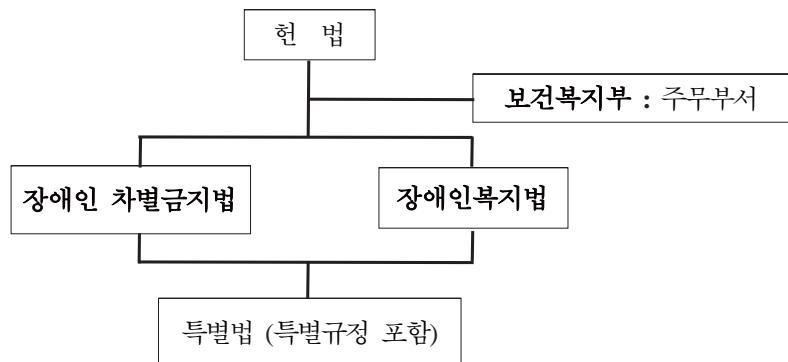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제정되어왔기 때문에 법체계적 정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법체계정비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의 큰 틀 속에서 법체계속에 정책의 이념과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정책의 효과적·효율적인 실천을 위한 법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법률들간의 기능과 역할이 잘 정비되고, 또 상호간에 조정·연계되어 중복과 낭비를 없애면서 통합적인 장애인복지행정서비스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하는 법체계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정책과 행정을 동시에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전달체계의 구축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행 장애인복지정책과 법체계는 기능상으로 구분되는 다원화된 전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장애인정책과 법의 주무부서가 다양함), 실제 운영을 해보면 유사한 기능들이 중복 되기도 하고, 또 주무부서들간의 조정·연계의 필요성도 발생하나 현실은 통합·조정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서비스수요자인 장애인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수요자중심의 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1) 현행 법체계의 합리적 재분류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장애인 관련 법률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분류방안이다.¹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위한 인권보장규범과 급부보장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이면서 일반법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법의 내용도 재정비하여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복지법은 그 명칭도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 개칭하여 급부보장규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의 중심으로 재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일반적인 권리보장과 차별금지 규정

14) 박병식 외 3인, 앞의 책, 157쪽.

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의 총칙 규정으로 통합하여 재정비하여야 한다.



<그림 3> 현행 법 체계 재분류화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상호간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여 장애인기본권의 총괄적 보장규범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기본권 보장의 일반법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외의 장애인 관련 법률들은 각 영역별 특별법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서 상호 마찰이나 충돌은 없는지 관련법률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특별법인 직업재활법이 일반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과 상호 모순 내지 충돌의 규정은 없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각 영역별 특별법간 또는 다른 영역별 특별법간에도 조정할 규정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장애인기본권 보장이론을 기본 틀로 하여 법체계화를 함으로써 법률들간의 상호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 기능과 역할이 분명해지며, 법내용상의 정비대상도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기본권 보장체계의 틀안에서 어디에 위치하여야 하는가를 먼저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법률과의 관계를 점검해볼 수 있다.

2)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

현행법 체계의 합리적 재분류화(장애인기본권 보장체계에 따른 재분류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서비스행정 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여전히 남는 문제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어 부처간의 의견조정 및 정책 이행에 대한 감독·평가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상설기구가 아닌 회의체 기구로서 상시적인 통합·조정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주무부서가 다른 경우에 통합·조정은 용이하지 않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하의 필수 기구이다(장애인복지법 제11조제1항). 다만 현재는 이 위원회가 회의체 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 정책간의 통합·조정 기능이 상시적으로 작동되지 않음으로서 사실상 그 위상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일년에 1~2 차례 열리는 형식적인 요식절차에 그칠 수 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실질화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와 필요성을 들어본다면 다음과 같다.

- ①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그 위상으로 인해 중앙부처간의 업무조정과 통합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 ② UN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에서도 이미 아태장애인10년(1993-2002)을 통하여 제시하였듯이, 장애인복지정책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권고한 바 있어, 이에 적합한 실무적인 행정기구의 필요성은 범세계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③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현행법상의 권한 사항을 보더라도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간의 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동법 제11조제2항) 이미 현행법은 국가조정 위원회와 같은 기능부여를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 ④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제도를 실질화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현행법의 틀 안에서 최소한의 법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도 그 시행이 가능하다.

- ⑤ 이러한에서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로서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통합·조정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본래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명목상 운영으로 인해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실질화하여 통합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 개선방안으로서 장애인정책 통합·조정 전담 상설기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법과 제도의 기본틀을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통합·조정 전담 상설기구 설치방안은 기존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여 국무총리(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하는 것이다. 필요하면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예컨대, 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책추진단 등). 이 위원회의 상설기구화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생각해볼 수 있다.

- ① 위원회의 상설기구화로 인해 장애인과 정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역할과 장애계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며, 관계부처간의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통합·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원회의 현행법상의 기능인 장애인 종합정책 수립, 관계부처간 의견조정 및 정책이행의 감독·평가 등을 실질화할 수 있는 것이다.
- ② 위원회는 종합정책의 수립과 정책 집행간의 조정역할을 함으로써(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 최소한의 기구로서 효과적·효율적인 장애인정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③ 새로운 법 제정 없이도 현행법의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다. 위원회의 상설기구 전환으로 인해 현행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정책과를 이 위원회로 흡수 통합함으로써 최소의 추가비용과 인력 투자로 시행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처에서 인력을 파견

토록 하여 조직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2) 개선방안으로서의 정책적 제언

1)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계 정립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법적 성격은 전자는 장애인 인권 보장규범으로서의 기본법, 후자는 장애인 급부(서비스)보장규범으로서의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 개칭하는 것이 보다 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양 법의 관계를 정립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내용 중 주로 총칙 조항들이 그 개선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의 법률 개선사항

가.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관련 법률에는 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여러 개별법에 등장하고 있다. 또 법마다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예컨대, 장애인 차별금지법에는 ‘장애와 장애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는 ‘장애인’,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우선구매특별법에서는 ‘중증장애인’, 편의증진보장법에서는 ‘장애인등’,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장애인 관련 용어는 그 법의 목적에 따라 용어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통약자’와 ‘특수교육대상자’라 할 수 있다. ‘교통약자’는 장애인을 비롯하여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포함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교통약자에 포함되는 장애인의 개념은 그 법에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상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 규

정상의 법정개념을 따르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수교육법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개념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과 동일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자폐성장애 등), 같지 않은 경우도 있고(정서·행동장애, 건강장애), 독특한 것도 있으며(학습장애, 발달지체), 용어가 다른 것(지적장애와 정신지체, 언어장애와 의사소통장애)도 있다. 바람직한 것은 단일한 장애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이 좋겠지만, 법마다의 목적과 특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통분모를 최대한 찾아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정의와 범주라 할 수 있다.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은 직업생활에 제약을 받는 장애인을 의미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범주를 형식적으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유형과 범주를 따르고 있어 특별법의 본래 취지에 맞는 개념규정인가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현행 개념과 분류체계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것이다.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현행법상의 장애인의 유형과 범주 체계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장애유형과 등급을 정해주는 등록제보다는 실질적인 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판정받는 실질적인 분류체계가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법정장애인의 정의와 개념이 포괄적이면서 개방적인 규정으로 하면서 탄력적·실질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¹⁵⁾

나. 편의증진보장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관계

편의증진보장법은 1998년에 장애인등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으로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접근권의 내용은 시설·설비에 대한 동등한 이용과 정보에의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 한편 이동편의증진법(2005년 제정)은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동권의 개념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5) 박병식 외 3인, 같은 책, 166~168쪽 참조.

이동권의 개념은 접근권의 실질적 개념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기존의 편의증진보장법의 내용이 사실상 이동권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했고, 또한 도로 및 교통 부문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다른 부서였기 때문에 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구가 커져서 이동편의증진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법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면 하나로 묶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 장애인복지법과 우선구매특별법의 관계

우선구매특별법은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상의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에 해당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제45조가 생산품 우선구매와 생산품 인증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특별법인 우선구매 특별법은 특히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해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특별법은 보건복지부 내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계획과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및 업무수행기관의 지정과 세제지원 등을 주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조문은 모두 19조로 되어 있다. 이 특별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라는 별도의 장(章)을 만들어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제4장 또는 제5장으로 규정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현재 이 특별법은 2008년 9월 22일에 시행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 법률통합의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특별법의 내용을 크게 수정함이 없이 그대로 수용한다면 시행전·후의 시기는 크게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특별법의 내용을 수정한다고 하면 시행전에 서둘러 통합개정 및 폐지하는 것이 시행착오와 혼란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라. 직업재활법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관계

장애인의 직업재활정책은 고용뿐만 아니라 창업지원까지 포함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따라서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법에는 고용과 창업 지원을

함께 아우르면서 장애인기업에 관한 지원까지 망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고용관련법제와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 관련 법제가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 법들 역시 주무부서를 달리하고 있는 점도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게 된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법의 관계에 있어서도 앞의 편의증진보장법과 이동편의증진법의 관계에서처럼 선행문제로서 복수의 주무부서 인정과 총괄 주무부서 인정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IV. 맷으며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애인 관련법의 정비는 장애인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을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기능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을 보건복지부로 할 것인가, 아니면 국무총리실 또는 대통령 소속의 별도기관으로 할 것인가 등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관련법 정비의 모양새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닌 별도 기구에서 정책 총괄과 조정을 한다면 장애인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전반적인 법정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체계하에서도 최소한의 개정으로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여 통합조정기능을 담당하는 상설기구로의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제도상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보여지지만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의 관계 정립에 따른 법률 정비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정책 전반에 걸쳐 있어 장애인복지법과 대등관계가 아닌 상위법적인 관계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은 둘 다 장애인정책 전반에 걸쳐 있는 법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며,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 보장 내지 차별금지(평등권 실현)라는 권리보장(권리구제 포함) 측면에서

규율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서비스(급부) 지원 측면에서 규율한다는 목적성이 다르다. 그러한 점에서 두 법은 권리보장과 급부보장이라는 별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장애인정책 전반을 받쳐주는 기둥법(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 개칭하여 보다 그 법의 기능을 분명히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 법이론과 법체계상 입법 기관이 동일한 법률들간에는 원칙적으로 상하관계가 성립될 수 없고, 다만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논해야 한다.

셋째, 현행 장애인 관련법간의 통·폐합의 문제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몇몇 법률들간에는 통폐합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통폐합의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우선구매특별법의 경우 직업재활적인 관점에서 장애인복지법 보다는 직업재활법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럴 경우에 현행 직업재활법에 담아서 통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현행 장애인복지법상의 우선구매제도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일반법인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룰 것인가, 아니면 특별법에서 다룰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현행 장애인 관련법의 정비와 함께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거나 미비한 정책영역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직업재활법의 정비가 이루어지더라도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미취업 내지 직업을 가지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으로서의 장애인연금법의 실질화라든가, 현행 장애인복지 관련법으로는 미흡한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대책에 관한 입법, 또 장애인 보조공학 및 보조기구 지원에 관한 입법,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립생활지원 입법 등이 있다. 이들 입법적 요구들은 장애인계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온 것으로서 현행 법제도와의 연관 속에 어떻게 반영하여 추진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후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첨언하자면, 장애인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단순히 법률의 수를

줄이는데 목적을 둔다면 이는 별 의미가 없다. 관련법의 정비가 정책의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보장과 전달체계의 개선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지원이다. 이 점이야말로 관련법 정비 전반에 항상 고려되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종인 외 2인,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2007
- 박병식 외 3인, 장애인 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한국정책기획평가원, 2008
- 박재원,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전개과정”, 지역과 정책 제2호, 목원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4
- 우주형, “장애인복지법의 이념과 성격”, 중앙법학 제2호, 중앙법학회, 2000
- 우주형, “장애인의 직업재활법제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논문, 중앙대학교, 2002
- 우주형, “장애인의 일 할 권리와 법제도화”, 장애인고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5
- 우주형, “장애인의 평등권의 실현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지성과 창조, 나사렛학술원, 2006
- 우주형 외 2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 유엔경제사회국·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국제의원연맹 엮음, 윤삼호 옮김, 배제를 넘어 평등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2008
- 조홍식 외 4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 제40회 RI KOREA 재활대회 자료집,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11
- 좌혜경,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실”, 제1회 전국뇌병변장애인대회 자료집, (사)한국 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2011. 10. 26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9. 04.
- 단병호의원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 2007.
- 보건복지부,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2006.
- 보건복지부,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20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 동향 및 정책

법제연구 / 제41호

과제』. 2009. 12.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10년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2010. 12.

정부 사이트 참조.

<국문초록>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은 대체로 4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1981년 이전으로 장애인을 한낱 자선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시절이고, 제2기(1981~1988)는 「장애인복지법」제정으로 장애인복지 이념의 등장과 태동시기에 해당하며, 제3기(1989~2006)는 장애인복지제도의 틀을 정비하고 복지서비스 확대를 도모하던 시기라고 할 것이며, 제4기(2007~현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으로 장애인 인권 및 복지 보장의 확대 전환기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는 2007년이 새로운 역사적 이정표를 세운 해라고 할 것이다. 이 해에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이 폐지되면서 새로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대체 입법 제정되었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되는 등 법제도 상의 팔목할만한 성과를 이루하였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관련 법제도의 입법화과정과 현행 법제의 체계를 살펴보고, 현행 법제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를 논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관련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주제어 : 장애인복지, 인권보장, 복지서비스, 자립생활, 참여와 평등

The Proposal for Improvement of Legal System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Woo, Jooh-Hyung*

In Korea, the evolution of welfar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an be divided largely four stages. The first phase is before 1981, the second is from 1981 to 1988, the third is from 1989 to 2006 and the fourth phase is from 2007 to now. In the first phase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onsidered as ones of charity. In the second period the welfare idea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appeared. In the third, the framework of welfare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formed and welfare services began to be expanded. The fourth phase has been the time to secure human right and social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2007 was the year of historical turning point.

『The Act of Prohibition on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Remedy for Right』 was built that year and became effective the next year. Also 『The Special Education Ac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enacted newly. 『The Disabled Welfare Act』 was amended for the change of welfare paradigm. The change is introduction of Independent Living. After 2007 Korean legal system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ave been improved largely.

Key Words : People with Disabilities, Security of Human Right,
Social Services, Independent Living, Participation
and Equality

* Ph.D. major in Law, Professor, Korea Nazarene University